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35
----------	------

2020.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5. 25.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2020. 5. 29.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주거와 관련된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여 아동을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주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아동 주거빈곤”을 정의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놓일 수 있는 아동과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정책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정의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처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검토의견

제안경위

-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주거빈곤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문제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봉양순 의원이 대표 발의(12명 공동발의)하여 5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그간 아동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19.11.1),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현장답사('20.4.29) 및 서울시장과의 정책간담회('20.4.29),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20.6.12) 등을 개최하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됨.

□ 제안배경

-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은 전국적으로 전체 아동의 9.7%인 약 94만명(54만 가구)에 달하며, 서울시의 경우 약 23만명(15만 가구)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음(붙임-1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최근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주거복지의 큰 틀에서 아동주거복지와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¹⁾, 아직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붙임-2 참조).
- 서울시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아동 주거빈곤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수단을 발굴·추진 중에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없이 단위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1) '19.10.24,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정부 관계부처 합동

'19.12.06, "내 방이 있는 집"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및 청년 입주자격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²⁾ (붙임-3,4 참조).

- 최근 우리사회는 저성장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계층별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금년에 접어들어서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사회에 발생하면서 기본소득보장을 포함하여 영역별로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음.
- 특히 주거빈곤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화재위험·폭염·위생상태 등 물리적 안전 위협상황, 개인공간 부재·빈번한 가족내 갈등상황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³⁾가 나오면서 아동주거빈곤 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임.
- 이러한 배경에서 장차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세대인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뿐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됨.

2) '19.6.~7. '자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 조사(25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19.9.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 및 '19.10. 관련기관 협약 '20.1~'21.1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 발주)

3) 2017년~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을 받고 2019년 주거개선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보호자 173명, 아동 153명 응답) 조사분석한 결과, 주거의 이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층 또는 옥탑방, 그 외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 18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 둘째, 아동 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시장이 5년 단위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의무와,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 (안 제3~5조).
 - 셋째,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주택공급 또는 개량, 임대보증금 지원, 긴급주거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 넷째,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변경,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및 해촉사유,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7조~제11조),
 - 다섯째, 시장은 필요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

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15조).

□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4)에서는 ‘아동’을 주거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19.10월 정부에서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강화대책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 조례는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대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주거환경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수준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동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사료됨(붙임-1 참조).

4)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19.10.24.)

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관련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안 제6조제1항)

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사업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긴급주거 지원사업 이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안 제6조제1항제5호). 여기서 '보호종료아동'⁶⁾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의미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을 의미함 (보호종료아동 현황은 붙임-5 참조).

-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8조7)에 따라 ‘자립수당’⁸⁾ 외에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는 임대료지원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월 15만원 지원), 주거환경조성(50만원 상당 생활·필수집기 등 물품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최장 4년까지 (1회 연장포함) 지원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거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급물량 5%범위 내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7)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전년도 대비 1년 늘어난 3년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책자, 2020.)

2019년	2020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근거를 마련하였음⁹⁾.

<현행 정부지원 주거형태 세부내역>

정부지원 주거형태	신청대상	서울시 지원 (국비:시비 50:50)
① 청년전세임대주택 (LH)	보호시설 퇴소예정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1순위 임)	임대료 지원:20만원 생필품 지원:5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20만원
②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LH)		
③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④ 자립형 그룹홈 입주지원(5인 이내)	만18세~만 23세이하의 자	국비매입, 시 운영
⑤ 자립지원 시설(자립생활관)	만18세~24세 이하의 자	민간시설, 운영보조비

※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지원, 만21세 이상은 이자(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출처: 주택정책과 내부자료)

- 개정 지침에 따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아동에게 국비와 시비매칭(50:50)으로 임대료·생필품·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정부주도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지원 사업들과 연계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9)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훈령 제1211호)

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범위내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필요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이와 유사하게 국토교통장관이 공고하여 운용중인 ‘최저주거기준’이 있는데, 이는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설정한 지표로서 ‘아동 적정주거기준’과는 차이를 보임(붙임-6 참조). ‘최저주거기준’¹⁰⁾에서는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 아동의 수를 감안한 용도별 방의 개수 등 공간적 기준을 정하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이대별 침실분리원칙 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10) 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1-490호, 2011.5.27.)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 방(침실)분리원칙 : 만6세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8세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남1, 여1), K는 부엌, DK는 식사겸 부엌, 숫자는 방수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주거 상향을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판단됨.

- 조례안에서는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다소 추상적·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의 범위를 고려하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설계적 요소(면적, 방의수, 설비, 구조 등)와 환경적 요소(채광, 환기, 소음, 악취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는 바¹¹⁾, 단서신설을 통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_____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법 상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라.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관련

-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 주거빈곤 상황이 일반

11) 환경적 요소와 관련한 개별 기준과 근거법들은 (붙임-7)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용역의 과업범위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포함시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붙임-5 참조)

성인이나 노인 등 고령의 주거취약계층과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존재하기에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 실질적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시행 및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주택·복지 등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¹²⁾에서는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아동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은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중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98년 설치)

- ▶ 설치근거 : 주거기본법 제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8조
- ▶ 설치목적 : 주거종합 계획 등 주거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 주관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2)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¹⁴⁾ ‘아동 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주거복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정합성 확보차원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음.
- 한편, ‘위원회 조례’를 주관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제출할 경우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규정 중 누락부분(존속기간,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¹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임¹⁶⁾.

1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사항

- 기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¹⁷⁾ 및 토론회에서는 ‘가족이 있으나 가출 등으로 노숙, 임시거처 거주 등 주거 위기상황인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¹⁸⁾. 가구에 소속된 아동의 경우 원가구가 아닌 별도 주거지원을 할 경우 가정이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 주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범죄, 성폭력 등 또 다른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노출이 예상되는 바 임시적이고 대안적 차원에서 주거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담당관 의견(서울협치담당관-6820, 2020.6.2.)

▶ 존속 기한

-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함.
- 존속기한은 최대5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며(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3), 5년을 초과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개정 통해 존속기한 규정변경 필요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제척이란,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17) 2020.6.3.~6.10.(8일간)

18) 의견제출자 : 청소년주거네트워크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5. <생략>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사업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5. <생략>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

- 그 밖에 ‘청소년 미혼모’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안 제16조는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¹⁹⁾하여 중앙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지원 조례」²⁰⁾를 선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주거안전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19) 舊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91호, 2012.12.31.제정.

20) 서울특별시조례 제7263호, 2019.7.18. 제정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신장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

- 금번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도권내에서 집중 조명됨으로써, 이들의 적정 주거수준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잡리잡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아동주거복지 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서울시의 분야별 복지정책을 총괄²¹⁾하고 있는 복지정책실과의 역할설정 등 서울시 관련부서간 관계정립을 포함한 부서간 업무협력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
연락처	02-2180-8208
이메일	urbanth@seoul.go.kr

21)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2012년 전국최초로 5개 분야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서울시민 복지기준1.0」(‘13~’18)을 마련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보완·발전시킨 「서울시민 복지기준2.0」(‘19~’22)을 향후 4년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으로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음(붙임-8 참조).

【붙임-1】 아동 주거빈곤 관련 통계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2018)

□ 전국 아동주거빈곤 현황

- 전체아동(970만명)의 9.7%(94만명)가 주거빈곤 상태

(단위: 명, 가구, %)

구분		아동수		아동가구수	
		명	비율	가구	비율
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789,121	8.1	468,351	7.7
	시설미달	-	-	84,433	1.4
	면적미달	-	-	386,583	6.4
	방수미달	-	-	76,640	1.3
	최저주거기준미달이거나 지하옥탑	857,499	8.8	515,509	8.5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86,605	0.9	55,664	0.9
주거빈곤		944,104	9.7	571,173	9.4
전체		9,777,867	100	6,083,089	100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서울·경기 아동주거빈곤 현황

- 서울의 경우 약 23만명(15만가구)이 주거빈곤 상황에 처한 상태임.

전국·서울·경기도의 아동주거빈곤 현황

(단위 : 명, 가구 (%))

구분	주택	아동수			아동가구수		
		전국	서울	경기	전국	서울	경기
	최저주거기준 미달	789,121 (8.1)	189,174 (11.5)	189,862 (7.4)	468,351 (7.7)	118,141 (11.0)	110,927 (7.0)
	최저주거기준 미달 이거나 지하옥탑	857,499 (8.8)	225,544 (13.7)	211,027 (8.3)	515,509 (8.5)	143,780 (13.4)	125,158 (7.9)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86,605 (0.9)	8,295 (0.5)	18,592 (0.7)	55,664 (0.9)	6,237 (0.6)	12,043 (0.8)
	주거빈곤	944,104 (9.7)	233,839 (14.2)	229,619 (8.9)	571,173 (9.4)	150,017 (14.0)	137,201 (8.6)
	전체	9,777,864 (100.0)	1,643,558 (100.0)	2,556,513 (100.0)	6,083,089 (100.0)	1,070,750 (100.0)	1,591,641 (100.0)

아동주거빈곤 가구와 아동가구의 주거 특성 비교

(단위 : %)

구분	사용방수	층		점유형태		주택유형		
		1	2	자가	전세	단독	아파트	
빈곤가구	1	16.8	지하	125	자가	28.2	단독	51.8
	2	54.2	지상	86	전세	21.6	아파트	19.0
	3	25.4	옥탑	1.5	월세, 사글세	43.3	연립	1.3
	4	2.8			무상	6.9	다세대	15.6
	5개 이상	0.8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5
						오피스텔	-	
아동가구	1	2.6	지하	1.1	자가	59.6	단독	19.7
	2	20.4	지상	98.8	전세	19.3	아파트	66.9
	3	63.5	옥탑	0.1	월세, 사글세	17.4	연립	2.2
	4	11.9			무상	3.6	다세대	8.5
	5개 이상	1.6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1
						오피스텔	0.6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주 : 주택에 대한 특성이 없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는 분석에서 제외함.

【붙임-2】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 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 ①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3.24>
 2. 삭제 <2016.3.24>
 3. 삭제 <2016.3.24>
- ③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3. 2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3. 24.>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붙임-3】 서울시 자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 조사결과

【 아동주거빈곤가구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서울시거주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가구(임차가구 대상)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및 구청 협조 대상선정
 - ◆ 조사규모 : 250가구(서울시 25개 주거복지센터별 10가구 내외)
 - ▶ 조사기간 : 2019. 6.25~7.17(23일간)
 - ▶ 조사방법 : 주거복지센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방문
 - ◆ 조사항목 : 가구현황 및 주거실태
 - ▶ 가구형태, 월평균 소득, 수급가구 여부, 주거비 부담, 10년간 이사 횟수, 점유형태,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 아동주거생활, 복지소요(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및 이주가능) 등
- ※ 주거복지센터 조사원 FGI 실시('19.7.19.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 주요 결과(총 245가구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대상)

○ 아동 주거실태

- 아동의 건강위험요소로는 습기·곰팡이 > 쥐·해충 > 채광·환기 > 추위·더위 > 소음 순
-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 여부 및 불만사항은 72.7%가 비좁음·개인공간 부족, 48.8%가 해충·위생상태 였으며 추위·더위도 24.4%였음.

○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

- 시설미달(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26가구(10.6%), 사용방수미달은 30.6%, 75가구, 면적미달은 112가구로 45.7%에 해당.

○ 주거복지 소요

- 주택에서 겪는 어려움 열악한 시설(61.2%), 주거비 부담(52.2%)순
- 희망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91%, 주택마련 대출 61.6%
- 주거급여수요 40.4% 희망 하였으며, 집수리지원 27.8%였음

【붙임-4】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 사업개요

- 용역명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0.1.~2021.1.(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최병두(면세사업자)
- 계약금액 : 금178,500천원(연구용역비)
- 주요과업
 - 서울 5대 권역별 만18세미만 아동가구 거주 4,000가구 조사
 - 아동주거빈곤 현황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과 문제점 파악,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정책 연구
 -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개발 등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20.1.13. : 연구용역 계약체결
- 2020.1.30. : 착수보고
- 2020. 6. : 중간보고
- 2020. 12. : 최종보고, 준공
- 2021. 5.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지원 방안

※ 필요시 연구 용역 과업 범위에 아동 주거의 최소한의 적정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아동 적정주거기준」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붙임-5】 보호종료아동 현황 (출처: 주택정책과 내부자료)

□ 보호종료아동 현황(2018)

(단위:명, %)

구분	합계	보호종료아동					
		만기퇴소(만18세)			연장종료(1년 이내)		
합계	2,606명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양육시설	1,065명	755(70.8)	432(40.5)	323(30.3)	311(29.2)	154(14.5)	157(14.7)
공동생활	192명	157(81.7)	79(41.1)	78(40.6)	35(18.3)	18(9.4)	17(8.9)
가정위탁	1,349명	647(47.9)	381(28.2)	266(19.7)	702(42.1)	237(17.6)	465(34.5)

▶ 지역별 현황 : 서울 386, 경기 413, 부산 242, 인천 122, 기타 시·도 1,443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준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여부(2018)

(단위:명, %)

구분	합계	보호종료아동	
		수급자	미수급자
합계	2,266명(100%)	958(47.8)	1,308(52.2)
양육시설	957명(42.2)	376(39.3)	581(60.7)
공동생활	141명(6.2)	87(61.7)	54(38.3)
가정위탁	1,168명(51.6)	495(42.4)	673(57.6)

□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소득현황(2018)

(단위:명, %)

합계	무소득	소득자				
		소계	80만원이하	81~100만원	101~150만원	151만원 이상
2,606명 (100%)	1,505명 (57.7%)	1,101명 (42.3%)	74(6.7)	82(7.4)	423(38.5)	522(47.4)

□ 보호종료아동 주거형태(2018)

(단위:명, %)

합계	정부지원 주거형태				정부지원 외 주거형태											
	계	내임대 주택 (전세주 택등)	자립 지원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계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위탁 가정	기 타	
2,606명	870	709	119	42	1,736	30	357	22	160	290	17	51	142	583	84	
100%	33.4	27.2	4.6	1.6	66.6	1.2	13.7	0.8	6.1	11.1	0.7	2.0	5.4	22.4	3.2	

※ 출처 :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붙임-6】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붙임-7】 주택관련 개별 기준 및 근거법

- **채광 및 환기** :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채광 : 거실 바닥면적의 1/10이상 또는 조도기준 이상 조명장치 설치
 - 환기 : 거실 바닥면적의 1/20이상 또는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
 - 100세대 이상 :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되도록 환기설비 설치
 -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소음 방지(경계벽 등의 설치)** :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경계벽 :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함
 - ※ 내화구조 ex) 철근콘크리트구조(기둥 25cm, 벽 10cm, 비내력벽 7cm 등)
 - : 철근콘크리트조 15cm 이상, 벽돌·석조 20cm 이상
 - 세대간 바닥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하거나 표준바닥구조 시공
 -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50데시벨 이하,
 -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58 데시벨 이하
 - 표준바닥기준 : 벽식 및 혼합식 21cm이상, 라멘구조 15cm이상
 - 공동주택(사업승인) : 공장 등 50m이상 이격 50데시벨 이하, 주유소·충전소 25m이상 이격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부 고시)

- **난방설비**
 - 개별난방설치 설치시 기준 : 보일러실 거실과 구획 등

- **소음·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 : 아침·저녁 45~60dB, 주간 50~65dB, 야간 45~60dB
 - 생활진동 : 주간 65dB, 심야 60dB

- **악취** * 악취방지법

- **대기오염** * 대기환경보전법

【붙임-8】 서울시민복지기준 2.0 개요 및 세부내용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19.9.5.)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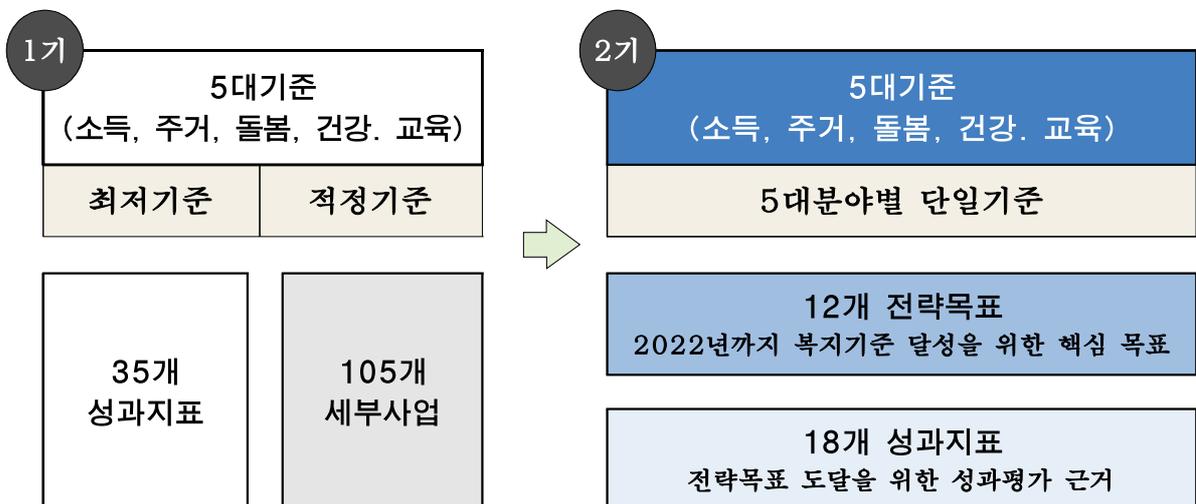
- 서울시민복지기준 1.0 운영 평가('17. 9 ~ '18. 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준비위원회 구성·운영('19. 1~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19. 1~8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0(안) 마련 : 5개 분야 기준, 1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시민(단체) 원탁회의 개최('19. 7.19) : 28개 시민단체 및 기관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확정(사회보장위원회, '19. 8.21)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방향 〉

◆ '사회적 권리(사회권)'의 보장 체계 강화·실질화

- '사회권' 보장 척도로써 복지기준 운영 및 평가에 중점 : 1기(사업중심) → 2기(기준평가중심)
-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기술
- 사회권 옹호 체계 실질화하여 시민참여 평가체계 구축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구조



구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소득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	
	1. 빈곤함에도 최저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1.비수급 빈곤인구수(↓)
	2.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근로빈곤율(↓)
	3. 서울시는 시민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	1.위기지원 건수(↑) 2.경제적 위기지원 신뢰도(↑)
주거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받는다	
	1. 주거문제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1.지원주택 개소수(↑) 2.주택내 낙상률(↓)
	2. 부적절한 거처의 문제를 해결한다	1.비주택 규모(↓)
돌봄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보장받는다	
	1.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1.돌봄서비스 만족도(↑)
	2.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어르신 돌봄서비스 이용률(↑) 3.공공보육비율(↑)
	3. 사람에게 맞추는 끊임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연결한다	4.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이용률(↑) 5.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건강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1. 지역주민 누구나 동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1.예방가능 사망률(↓)
	2. 생애과정에 걸쳐 언제나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2.건강수명(↑)
교육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평생에 걸쳐 학습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1.집단별 교육참여율 격차(↓) 2.교육불참 사유중 교육개선사항 비율(↓)
	2. 양질의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인다	1.교육만족도 지역 격차(↓) 2.공공기관 교육적 활용도 지역격차(↓)

【붙임-9】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가구 주거지원 등 사업 추진 현황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제1209호, '19.7.23)
- 공급대상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 : 용도별 방수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 설치, (단, 면적 1인(14 m²)부분은 제외)의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가구
- 공급방법 : 매입임대 주택 투룸이상 다가구(50~60m²)
- 자격 :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내
-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총자산 1.96억원, 자동차2.5천만원)

연차별 공급계획

2019년 100호	→	2020년 130호	→	2021년 150호	→	2022년 200호
---------------	---	---------------	---	---------------	---	---------------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투룸이상 다가구(50~60m²)
- 임대료 : 시세의 30% 내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35만원 이하 책정**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자원연계·운영

- 외부자원 연계·협력 : **보증금(100만원)전액 지원 및 이사비 등 지원**
 - 협력기관: (사)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공급실적 : 87호 (계약완료 67가구, 계약대기 20가구)

※ 자치구별 공급실적 (입주계약완료 가구)

(2020.05.31.기준)

구 분	공급호수	구 분	공급호수
소 계	67	동작구	2
종량구	3	동대문구	7
강서구	5	성북구	7
광진구	2	은평구	1
구로구	12	양천구	2
금천구	14	용산구	1
도봉구	2	강북구	2
노원구	2	영등포구	4
송파구	1		

※ 6월 하순 동·호수 선정 등 계약 대기 20가구